별첨

채용결격 사유

□ 관련근거 : 공사 업무직관리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TOEIC 기준 공인영어성적 환산표

▢ TOEIC 기준 공인영어성적 환산표 — New TEPS, TOEFL(iBT)

TOEIC	New TEPS	TOEFL(iBT)
990	558~600	118~120
985	526~557	117
980	504~525	116
975	486~503	-
970	471~485	115
965	458~470	114
960	446~457	113
955	437~445	112
950	428~436	111
945	420~427	-
940	412~419	110
935	406~411	109
930	400~405	-
925	394~399	108
920	389~393	107
915	384~388	-
910	379~383	106
905	375~378	105
900	370~374	-
895	366~369	104
890	362~365	103
885	359~361	-
880	355~358	102
875	352~354	101
870	348~351	-
865	345~347	100
860	342~344	99
855	339~341	-
850	336~338	98
845	333~335	97
840	330~332	96
835	327~329	-
830	324~326	95
825	322~323	94
820	319~321	-
815	316~318	93
810	314~315	92
805	311~313	-
800	309~310	91
795	306~308	90
790	304~305	-
785	301~303	89
780	299~300	88
775	297~298	-
770	294~296	87
765	292~293	86
760	290~291	-
755	288~289	85
750	285~287	-
745	283~284	84
740	281~282	83
735	279~280	-
730	277~278	82
725	274~276	-
720	272~273	81
715	270~271	-
710	268~269	80
705	266~267	-
700	264~265	79
695	262~263	-
690	260~261	78
685	258~259	-
680	256~257	-
675	254~255	77
670	252~253	-
665	250~251	76
660	248~249	-
655	247	75
650	245~246	74
645	243~244	-
640	241~242	73
635	239~240	-
630	237~238	72
625	236	71
620	234~235	-
615	232~233	70
610	230~231	69
605	229	-
600	227~228	68
595	225~226	-
590	224	67
585	222~223	-
580	220~221	66
575	219	-
570	217~218	65
565	215~216	-
560	214	64
555	212~213	-
550	211	63
545	209~210	-
540	208	62
535	206~207	61
530	204~205	-
525	203	60
520	201~202	59
515	200	-
510	198~199	58
505	197	57
500	195~196	56
495	194	55
490	193	-
485	191~192	54

❍ TOEIC 485점 이하, New TEPS 192점 이하, TOEFL(iBT) 54점 이하는 TOEIC 기준 485점 처리

❍ 미제출 시 0점

❍ 공인영어성적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취득·유효한 국내 정기시험 성적에 한함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대상자는 모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응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전형 당일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반드시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장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응시자 외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